

##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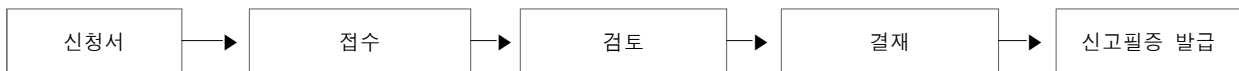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 유의사항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营业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축산부서)